

2021년도 2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1. 9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□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1. 4. 1. ~ 6. 30.(2021년 2분기)
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

□ 접수결과

- 2021년 2분기 총 172건 접수

[표 1] 2021년 2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| 접 수 창 구 | 합 계 | 4월 | 5월 | 6월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|----|----|
| 공익제보 지원센터 | 공직자비리신고 | 103 | 30 | 27 | 46 |
| | 공익신고 | 55 | 19 | 22 | 14 |
| | 부정청탁 | 3 | 2 | 0 | 1 |
| | 퇴직공무원특혜 | - | 0 | 0 | 0 |
| 국민권익 위원회 | 국민신문고 | 11 | 4 | 5 | 2 |
| 합 | 계 | 172 | 55 | 54 | 63 |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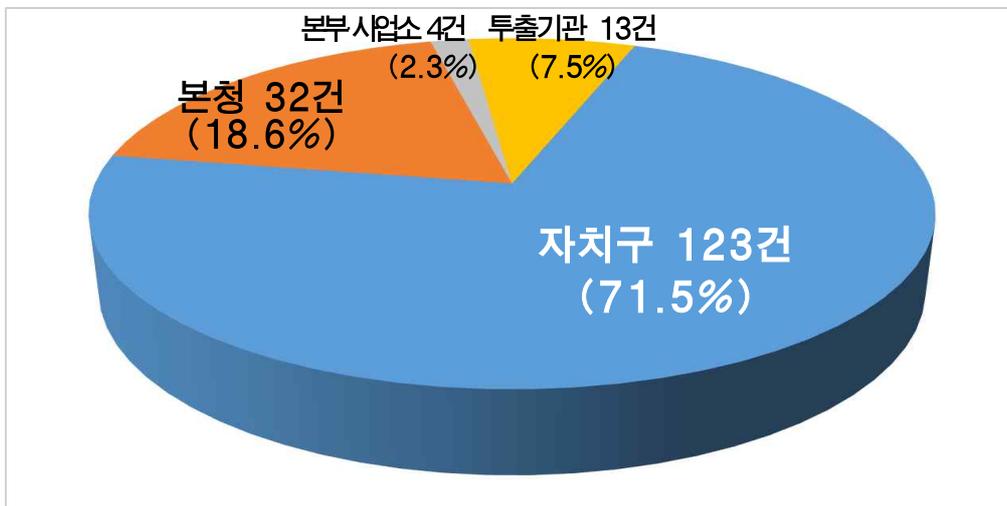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| 경로 | 합 계 | 공익제보지원센터 | | 국민권익위원회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 | 오프라인 우편/방문/팩스 |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 |
| 접수건수 | 172 (100%) | 156 (90.6%) | 5 (2.9%) | 11 (6.3%) |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123건(71.5%)으로 가장 많았음
 - 식품위생법,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41건
 -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등 69건
 - 기타 민원상담 등 13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32건(18.6%), 본부/사업소 소관 4건(2.3%)
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5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27건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1건, 공직자비리신고 3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3건(7.5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3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0건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72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55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| 총계 | 공익제보 해당 155건(90.1%) | | 일반민원/기타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부패신고 | 공익신고 | |
| 172 (100%) | 105 (61%) | 50 (29%) | 17 (9.8%) |

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| 구 분 | 개 요 | 신고 대상 행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부패 신고 | 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 |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|
| 공익 신고 |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 | 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|
|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|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| 공정한 직무수행(직무수행 기본자세 등)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|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해당 155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105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| 구분 | 소관기관 | 건수 | 내 용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|
| 부 정 청 탁 | 본 청 | 1 | 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 |
| | 자 치 구 | 5 | |
| | 소 계 | 6 | |
| 업 무 부 적 정 | 본 청 | 17 | 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 |
| | 본부·사업소 | 2 | |
| | 자 치 구 | 48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6 | |
| | 소 계 | 73 | |
| 불 공 정 행 위 | 본 청 | 5 | 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|
| | 본부·사업소 | 1 | |
| | 자 치 구 | 3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2 | |
| | 소 계 | 11 | |
| 복 무 | 본 청 | 2 | 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 |
| | 본부·사업소 | 0 | |
| | 자 치 구 | 12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1 | |
| | 소 계 | 15 | |
| 총 계 | | 105 | |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50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| 구 분 | 건수 | 소관기관 | 조치 상황 | 내 용 |
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도 시 정 비 법 | 9 | 자 치 구 | 개선3, 해당없음4, 권한없음1, 취하1 | 조합의 부당한 용역계약 체결 신고 등 |
| 주 차 장 법 | 5 | 자 치 구 | 개선1, 진행중1, 해당없음1, 중복1, 취하1 | 빌라 주차장 내 불법 창고 설치 철거 요청 등 |
| 건 축 법 | 4 | 자 치 구 | 조치(시정명령)1, 해당없음2, 취하1 |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|
| 식 품 위 생 법 | 3 | 자 치 구 | 조치1(과태료), 개선2 | 음식점 위생상태 불량 등 |
| 옥 외 광 고 물 법 | 3 | 자 치 구 | 개선2, 취하1 | 옥외 불법 현수막 철거 등 |
| 공 동 주 택 관 리 법 | 1 | 본 청 | 해당없음3 |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위반 등 |
| | 2 | 자 치 구 | | |
| 개 인 정 보 보 호 법 | 1 | 사 업 소 | 조치(주의)1 |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|
| | 1 | 투 자 출 연 | 취하1 | |
| | 1 | 자 치 구 | 개선1 | |
| 근 로 기 준 법 | 1 | 본 청 | 진행중(노동부)1 | 근로자 휴일 수당 미지급 등 |
| | 1 | 자 치 구 | 조치(시정명령, 환수)1 | 어린이집 교사 채용계약일 허위 보고 등 |
| 감 염 병 예 방 법 | 1 | 자 치 구 | 개선1 | 방역수칙 위반 불법영업 |
| 공 유 재 산 법 | 1 | 자 치 구 | 해당없음1 | 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요청 |
| 공 인 중 개 사 법 | 1 | 자 치 구 | 조치(과태료)1 | 공인중개사 설명·표기 등 의무 위반 |
| 공 중 위 생 관 리 법 | 1 | 자 치 구 | 개선1 | 상가 화장실 비위생물건 처리 |
| 관 광 진 흥 법 | 1 | 자 치 구 | 해당없음1 | 외국인관광 민박업 불법영업 |
| 도 시 가 스 법 | 1 | 투 자 출 연 | 해당없음1 | 연료공급사업자 부당선정 |
| 방 문 판 매 법 | 1 | 본 청 | 증거불충분1 | 비트코인이용 다단계 사기 |
| 보 행 안 전 법 | 1 | 투 자 출 연 | 해당없음1 | 지하철역 지하상가 내 발생사고 피해보상 요구 |
| 의 료 법 | 1 | 자 치 구 | 개선1 | 성형외과 유튜브 광고 신고 |
| 장 애 인 복 지 법 | 1 | 본 청 | 해당없음1 | 무연고 발달장애인 불법 퇴소 및 학대 |
| 폐 기 물 관 리 법 | 1 | 자 치 구 | 진행중1 |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|
| 하 수 도 법 | 1 | 자 치 구 | 개선1 | 음식물 처리기 불법 개조 판매 등 |
| 일 반 민 원 | 1 | 본 청 | 해당없음1 | 오솔길 우레탄 포장 반대 등 |
| | 5 | 자 치 구 | 개선1, 해당없음1, 중복3 | |
| 총 계 | 50 | | | |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1.8. 20. 현재)

□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| 총계 | 처분 및 개선(39) | | 종결(94) | | | | 진행중 | 취하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
| | 처분 (조치) | 개선 등 | 해당없음 | 권한없음 | 중복 등 | 중지 (감사원 감사, 수사 재관중) | | |
| 172 | 7 | 32 | 71 | 2 | 13 | 8 | 22 | 17 |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| 연번 | 신고구분 | 신고 내용 | 처분기관 | 조치 내역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 | 공 익 |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| 감사위원회 | 주의요구(주의)1 |
| 2 | 공 익 |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| 자 치 구 | 시정명령 |
| 3 | 공 익 | 어린이집 교사 계약체결일 허위 보고 등 | 자 치 구 | 시정명령, 환수조치 |
| 4 | 공 익 | 음식점 위생상태 불량 | 자 치 구 | 과태료 |
| 5 | 공 익 | 공인중개사법상의 대상물 설명 등 의무 위반 | 자 치 구 | 과태료 |
| 6 | 부 패 | 민간위탁기관의 인사비리 등 제보 | 본 청 소관부서 | 주의,개선 |
| 7 | 부 패 | 민원 미처리(직무유기) 및 소방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답변요구 | 본 청 소관부서 | 과태료,원상회복 조치 |